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세분화된 개별급여 수급자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거안정자금 용자한도액 근거 조항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 변경 :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나.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 변경(안 제1조, 제3조)

- 당초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변경 :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다. 주거안정자금 용자한도액 근거 조항 변경(안 제6조)

- 당초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 변경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1조

라. 감면 조치 대상 변경(안 제21조)

- 당초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 변경 :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하 "주거안정자금"이라 한다)으로 기 융자한 회수자금
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

3.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4.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 등

제3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 ① 전세입주보증금 용자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주거 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등 무주택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계속하여 구미시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용자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선정된 가구로 한다.

② 생활안정자금의 용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3. 대학 이상의 자녀 학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에 따라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절차) ① 주거안정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가구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

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5조(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주거안정자금 신청가구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생활형편 등을 조사하고 구미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읍·면·동장 임회하에 당사자간 계약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용자 지원한 전세입주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을 읍·면·동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전세입주보증금은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이 경우 용자한도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내로 한다.

④ 입주가구가 희망할 경우 입주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내에서 제3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계약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

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용자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용자대상자"라 한다)에게 가구당 200만원 이내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무이자로 용자한다.

② 시장은 용자대상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용자대상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용자대상자의 명부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안정자금의 용자기간) 주거안정자금의 용자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 주거안정자금을 용자받은 가구는 입주일 이후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다음 각 호의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입주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 3년부터 5년까지

2. 납입금액 :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안정자금을 용자받은 가구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를 관할 읍·면·동장과 주거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연명으로 하며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③ 시장은 주거안정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의 생활형편 등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저축기간과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에게 가구당 1천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는 융자받은 생활안정자금을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11조(계약해지 및 융자금반환) ① 시장은 주거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가구
2. 임대기간중 구미시 관내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가구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가구
4.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용자를 받은 자가 구미시 관내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2조(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 용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전세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②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용자대상자의 용자기간이 만료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안정자금의 상환) ①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가(이하 이 조에서 "상환의무자"라 한다)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 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수자금의 용도) 시장은 회수된 자금을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용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중복용자의 금지)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는 용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용자받을 수 없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회수용자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자금으로 한다.

제1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21조(감면조치) 시장은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세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구미시저소득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저소득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감면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

전의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소관 실 · 과		주민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배 정 미
	담 당	안 진 희
	담 당 자	유 지 현 (480-5124)